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12. 14.(목) / 총 6매(본문 3)
담당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당 자	• 과장 나기호, 사무관 김희경, 주무관 유승우 • ☎ (044) 201 - 4011, 4012
보 도 일 시		2017년 12월 1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14.(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물류 보안사고, 이것만 지키면 막을 수 있어요” 육상 물류 보안강화를 위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기업이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물류보안이란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 물류보안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제도들이 항만·공항 등 국제물류 중심으로 관리되어 육상 물류분야의 보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들을 기초로 육상물류에 참고·적용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 미국 C-TPAT, 세계관세기구 AEO, APEC 공급사슬보안 가이드라인, 싱가포르 STP
-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은 육상 물류분야에 필요한 보안유형(8개)과 각 유형별 보안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육상 물류분야 보안유형 및 보안활동 >

유형	보안활동
① 물리적 보안	보호장벽, 잠금 및 경보장치 설치 등
② 접근통제	사람, 차량에 대한 접근통제시스템 구축 등
③ 공급사슬 운송 보안	운송수단 자체 보안활동 등
④ 인적 보안	직원 식별 및 권한부여 등
⑤ 보안교육 및 훈련	의사소통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⑥ 화물취급 절차보안	물류활동 프로세스, 보관·봉인절차 등
⑦ 문서처리 및 정보보안	문서처리활동, 정보보안 등
⑧ 거래상대자 보안	상호협정, 정보공유 및 협조 등

○ 정의된 물류보안 활동별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육상물류 참여 주체들의 업종별(3개)* 적용 우선순위 및 난이도를 제시하여 보안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 예시 > 물리적보안-보호장벽, 잠금 및 경보장치 설치 관련

물류보안 활동 가이드라인	적용빈도(우선순위)			난이도
	화물 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 화물보관시설(창고 등)을 운영하는 경우, 화물특성 (내수/수출, 저가/고가, 일반/위험물 등)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표시하고 분리하여 보관	▲	●	▽	2
• 분리된 화물구역은 가급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특별히 분리된 화물은 건물 내 또는 구역 내에 펜스를 설치하여 보관	▲	●	▽	2
• 고위험물구역 운영시, 구역 내·외부에 명확한 표시를 하고 시건장치를 활용하여 출입을 통제	▲	●	▽	2

* 적용빈도(●: 높음, ▲: 중간, ▽: 낮음), 난이도(3: 높음, 2: 중간, 1: 낮음)

□ 또한, 물류보안 사고사례를 본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물류보안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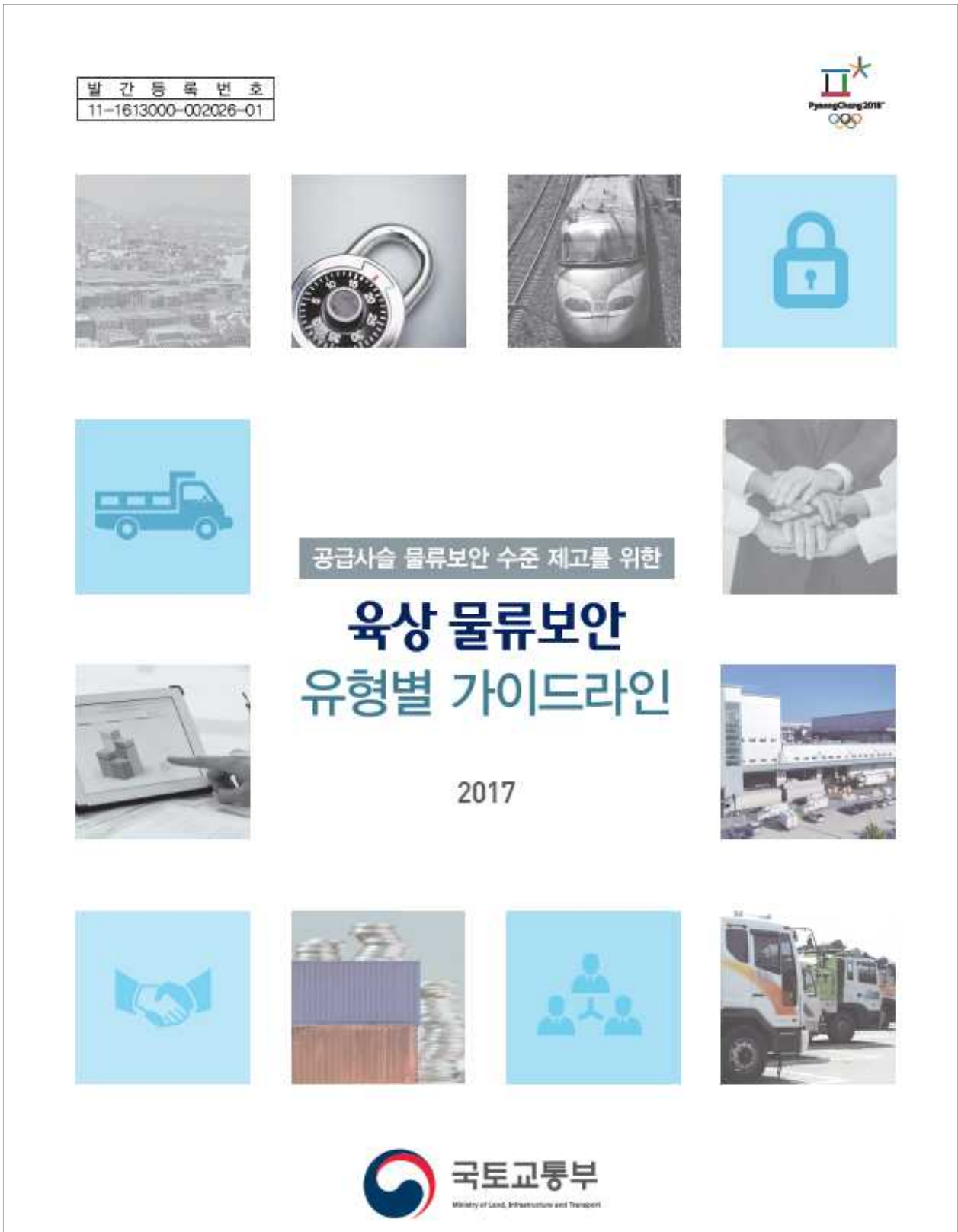
-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책자로 작성하여 물류 기업에 배포할 예정으로 물류기업들의 보안강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12월 15일부터 국가물류정보센터(www.nlic.go.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붙임 :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 표지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 시설정보과 김희경 사무관(☎ 044-201-40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목차]

제1장 물류보안의 개요

1. 물류보안의 정의
2. 물류보안 취약 구간 및 육상 물류보안의 의의

제2장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

1.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 활용방법
2.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
 - ① 물리적 보안
 - ② 접근통제
 - ③ 공급사슬 운송 보안
 - ④ 인적 보안
 - ⑤ 보안교육 및 훈련
 - ⑥ 화물취급 절차보안
 - ⑦ 문서처리 및 정보보안
 - ⑧ 거래상대자 보안

제3장 국내 물류보안 사고 사례와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 검토결과

1. 물류보안 사고사례 개요
2. 사고사례에 대한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 적용사례

<참고자료> 글로벌 주요 물류보안 제도와 물류보안 활동의 유형

1. 글로벌 주요 물류보안 제도
2. 물류보안 활동의 유형

여러분의 소중한 물류자산을 지키는 물류보안 8가지 팁 

1. 물리적 보안을 확립합니다!
2. 물류자산에 대한 적절한 접근통제를 실시합니다!
3. 운송과정에 대한 보안대책을 시행합니다!
4. 직원과 종사자에 대한 인적보안에 각별히 유의합니다!
5. 보안교육과 훈련을 통해 물류보안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합니다!
6. 적절한 화물취급 절차를 숙지하고 지킵니다!
7. 문서처리 및 정보보안에도 유념합니다!
8. 거래상대방과의 보안에 유의합니다!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감지 또는 계의 받은 때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ilt.go.kr>
- 주 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 전 화 상 담 TEL : 044)201-3124 FAX : 044)201-5506